

[붙임 1]

##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

1. 일반현황								
수요기관	서울특별시 도시기 반 시설본부		공사명	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				
계약방법	일괄입찰		계약자	롯데건설(주)		낙찰율	94.45%	
기술부서	도시철도 토목부		담당자	김용선	전화 : 02-772-7210	FAX : 02-772-7306		
계약현황	총공사 계약현황				시공중인 공사 계약현황			
	계약일	09.12.30	계약금액	157,561,856,000 원	계약일	09.12.30	계약금액	157,561,856,000 원
	착공일	09.12.31	준공예정일		착공일	09.12.31	준공예정일	
물가변동 조정현황	조정회수	1회		2회	3회	4회	5회	
	조정방법	지수		지수	지수	지수	지수	
	조정기준일	2010.05.26	2011.01.31	2012.01.01	2014.09.01	2017.09.30		
	조정율	3.06%	3.55 %	3.37 %	3.23 %	3.58 %		
	조정금액	3,692,103,000 원	4,415,601,000 원	4,027,033,000 원	2,513,099,000 원	545,417,000 원		
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현황								
물가변동 조정율(A)	3.58%		물가변동 경과기간	1,124 일		계약체결일	2009년 12월 30일	
						직전조정기준일(기준시점)	2014년 09월 01일	
						조정기준일(비교시점)	2017년 09월 30일	
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(B)			157,561,856,000 원		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	예정 공정율	86.18%	
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(C)			138,968,214,155 원		물가변동 적용대가 (D) (B - C = D)		18,593,641,845 원	
선금급 공제금액 [F] (D × A × E = F)			120,235,000 원		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[G] (A × D = G)		665,652,000 원	
경유세 공제금액 [H]					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= (G - F - H)		545,417,000 원	
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								
번호	첨부 서류명					부수	비고	
1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(프로그램 데이터 포함)					1	붙임 2 참조	
2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(프로그램 데이터 포함)					1	붙임 3~10 참조	
3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및 기타 참고사항					1	붙임 11 참조	
4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								
<p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,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와 회계 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바 3%이상 상승(하락)하였으며,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 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8년 03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(직인)</p>								

주) 1.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.

2.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